96 한약재 유통현황과 가격동향 그리고 전망

얼음장 경기 설연휴 '썰렁'

재배기피 편중재배, 일부품목은 품귀

과잉재배로 시세폭락, 거래부진 여전

지난 몇해동안 한약재 시장을 덮고 있는 한랭기류는 매서운 겨울 한파를 무색케 한다. 그 어느해 보다도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던 96년. 수입개방의 거대한 물결속에서 국산생약재는 기가 꺽인채 제약사들의 엑스제 수입은 계속되고 안으로는 규격화 시행이다, 한약분쟁이다 이런저런 요인들로 생약업계는 고전을 면치 못한 가운데 경기는 얼어붙고 그속에서 생산 농민들의 재배기피현상도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비교적 판로가 안정돼 있다고 여기는 황기를 비롯 재배가 용이한 일천궁 등 일부품목의 재배면적이 지난해 다소 확대되기는 했으나 지난 여름 예기치 못했던 수해와 가뭄피해로 평당수확량도 감소한데다 과잉재배로 오히려 시세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전체적으로는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가격오름세를 보이기 시작 일부품목의 경우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전반적인 불황의 기미가 가실 줄 모르채 유례없는 거래부진 현상이 이어져 시세형성 마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다.

이와함께 수출실적도 부진해 예년의 절반수준을 밑돈 반면 밀수적발 건수는 예년의 10배에 달하는 등 생약업계의 면면들은 생산농민들의 재배의욕을 무참히 꺽어 놓기에 충분했다.

이제 곧 일춘이다. 파종을 준비해야 할 봄이다. 그러나 지루한 불경기의 끝자락이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설연휴를 앞두고도 경기는 여전히 바닥세다. 농민들의 재배기피현상은 갈수록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 국내 생약농업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한다.

그 요인중의 하나로 관계전문가들은 수급조절품목 제정목적에 위배되는 통합공고상의 수입요령을 들고 있다.

지난 92년에 새로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원료의약품 및 한약재만 의약품 수출입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식품으로는 별도의 규정없이 수입이 가능하게 돼 있는 것.

이에대해 업계관계자들은 『국내 생산자보호차원에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수급조절품목이 식품용도로 교묘히 수입되는 것은 수급조절상의 목적상 위배되므로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된 수입량 범위 내에서 수입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황기 비교적 안정적 판로와 시세형성으로 황기는 지난해 재배면적이 예년보다 대폭 증가했다.

풍작에다 과잉재배로 인해 햇것이 출하되는 시점에서 부터의 시세하락을 예측했으나 1년근 소황기 경우 1천원 안팎으로 다소 하락세를 보이긴 했으나 우려했던 것 만큼의 큰 가격폭락은 없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소황기 도매시세는 근당 5천5백원선.

정선, 태백 등 주로 강원지역에서만 생산돼 오고 있는 3년근 이상 대황기는 갈수록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시세는 항상 2만~3만원 대의 상한가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올해 황기 재배면적은 지난해와 달리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1년생 황기의 경우 지난해 심었던 밭에 재파종했을 경우 연작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천궁 지난해 토천궁시세는 근당 5천원 선으로 예년의 1만원선에 비하면 덕없이 낮은 시세를 형성했다. 이처럼 급격한 시세하락으로 재배면적도 대폭 감소한 반면 울릉도와 영양이 주산지인 일천궁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그 면적이 확대돼 생산량 과잉을 가져왔다.

이에따라 초반에는 4천5백원 선을 형성하던 일천궁시세가 중반기에 3천원대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부터는 2천원대로, 그중 하품은 1천8백원선까지 추락. 현재 토천궁은 근당 4천5백원선에 일천궁은 근당 2천2백원선에 머물고 있는 것.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올 일천궁 재배면적은 예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산들의 움직임 여하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일천궁 시세는 당분간 큰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 수입산 건강의 대량반입으로 근당(600g) 6~7천원 선이던 국산 건강값이 3천원 대로 폭락한 반면 kg당 1천5백원선이던 생강값이 지난해는 5천5백원선까지 폭등하는 이변을 초래.

생강값이 이처럼 껑충 뛰어오른 이유는 수입생강여파로 지난해 생강재배면적이 눈에띄게 감소한데다 뿌리썩음병 발생으로 평당 수확량도 대폭 감소한 때문이다.

현재 건강시세가 근당 4천2백원 선까지 회복이 되긴 했으나 kg당 5천5백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생강으로 출하가 몰리는 바람에 국내산 건강은 물량이 귀해 극소량만 유통되고 있는 실정.

수입건강의 유통량에 따라 국산의 시세도 변동되겠지만 무엇보다 농촌인력 부족으로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 생강값이 대로 상승세를 탄다면 건강시세변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듯.

맥문동 4·5월에 수확기인 맥문동은 충남 청양이 주산지. 매년 1천근 가까이 수확되던 것에 비해 지난해 생산량은 7백근 정도로 예년보다 줄었다. 시세가 바닥세를 면치 못하자 농가에서 재배를 기피 재배면적이 예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때문이다. 연작피해와 가뭄으로 인한 작황부진도 한 원인.

덕분에 지난해 맥문동 시세는 연일 신나게 상승곡선을 그렸다.

그 여세를 몰아 올 초 맥문동 값은 여전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거래되는 맥문동 도매시세는 근당 1만4천원(거심), 1만원선(막맥)이다.

당귀 지난 95년 당귀값 대폭 폭락으로 지난해 당귀 재배면적은 예년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칠 만큼 현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띄었다. 그로인해 95년 수확기 당시 2천3백원선까지 곤두박질쳤던 토당귀시세가 지난해 7월쯤에는 3천원대로 진입.

지난해 생산량이 대폭 감소한 때문도 있지만 창고에 쌓여 있던 그동안의 재고량이 어느정도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당귀값은 차츰 회복세를 나타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당귀 도매시세는 토당귀가 근당 6천6백원선. 일당귀가 4천8백원 선이다. 그러나 거래는 역시 부진한 편이다.

〈문정희 기자〉

96년 주요약재 시세 현황

(단위 : 원)

품목 \ 분기	3월	6월	9월	12월	97년 1월
건강	2,500	3,000	3,300	3,800	4,200
맥문동	6,700	7,200	7,500	11,500	14,000
(토)당귀	2,800	3,000	5,500	7,200	6,600
강활	3,200	4,500	5,000	5,200	4,800
지모	2,800	3,000	3,500	4,700	5,500
산수유	8,000	8,000	8,000	7,000	6,000
현호색	5,000	7,000	8,000	8,300	8,500
길경(통)	5,500	6,200	7,000	6,500	6,700
황기(大)	23,000	25,000	27,000	28,000	3,000
(小)	8,000	10,000	12,000	7,000	5,500
일천궁	4,400	3,700	2,500	3,000	2,200
택사	3,300	3,900	4,500	4,800	5,000
하수오	12,000	11,000	12,000	10,000	8,800

◇국내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수급조절품목이 식품용도로 교묘히 수입되는 것은 수급조절품목 제정취지에 위배되므로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된 수입량 범위 내에서 수입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사진은 황기수확 장면)

한약재 원산지표시 단속권두고 "갈등"

〈1면에 이어〉

지난 95년 이후 농산물검사소에서 실시한 원산지표시 적발실적을 보면 95년 1백96업체 96년 3백84업체로 이중 한의원 한약방 적발건수는 95년 21개소 96년 88개소이다.

전문단속요원들의 식별능력향상에 따라 적발건수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함께 약재수입도 94년 4만7천3백26t에서 지난 96년 2만5천6백40t으로 무려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한약재 원산지표시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으며 생산농가 보호 차원에서도 어느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복지부와 각 시군에 수입과 국산약재을 식별할 만한 전문인력도 갖추지 않은채 약사법을 들어 한약판매상들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막는 이유를 검사소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동대문구청 위생계 한 관계자는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지만 원산지표시 여부는 잘부를 추적해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검사소측 관계자는 『잘부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국산에 대해 어느정도 육안 식별능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무엇을 근거로 잘부추적을 하겠냐』며 납득이 안간다는 입장.

허위표시시 처벌사항도 약사법과 대외무역법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농산물 검사소측에 따르면 약사법의 경우 허위표시 적발시 2백만원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조항이 다소 미미한데 비해 대외무역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강한처벌로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관계없이 농산물검사소측은 원산지표시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어 원산지표시제 단속권을 두고 한동안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